

	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3. 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시행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, 임무, 임용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산학협력중점교원”이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전일제(Full-time)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하며,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과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자격)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경력 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이 있어야 한다.

② 산업체 경력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
 - 가.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 - 나. 공업, 기타 제조업, 광업, 운송업,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,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
2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준경력 포함)에서 해당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 또는 전일제로 종사한 경력
3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 또는 전일제로 종사한 경력

③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체경력기준 제2항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총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임무)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의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산학협력 교육활동
 - 가. 현장실습 지도
 - 나. 캡스톤디자인 지도
 - 다.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
 - 라. 학생취업 연계
 - 마. 학생창업지도
 - 바. 산업체 재직자 교육
 - 사. 기타 교육과 관련한 사항

2. 산학협력 연구 활동
 - 가. 기술이전
 - 나. 특허등록
 - 다. 산업체 연구비 수혜
 - 라. 기업부설연구소 유치
 - 마. 교원창업
 - 바. 신기술·제품 인증
3. 산학협력 봉사활동 등
 - 가. 기술 · 경영지도
 - 나. 가족회사 유치·관리
 - 다. 산업체 파견 활동
 - 라. 산업체 방문 특강 등

제5조(책임강의시수)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임용구분)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하되, 전임교원은 「목포과학대학교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교원인사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 다만, 자격 및 임무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제7조(전임교원의 신규임용)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전임교원의 소속)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학과(학부)에 소속되며,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겸무할 수 있다.

제9조(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) ①총장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추천서<별지 1-1>
2. 학과(학부, 전공, 교실) 동의서<별지 1-2>
3. 산학협력계획서<별지 1-3>
4. 최근 3년간 산학협력실적<별지 1-4>

②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은 총장이 지정한다.

제10조(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지정 해제) 총장은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된 전임교원 중 사업 이 종료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1조(승진, 재계약임용, 정년보장임용 등)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의 승진임용, 재계약임용, 정년보장 임용 등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연구실적물 등 업적평가 자료의 활용)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의 연구실적물 등 업적평가 자료의 활용은「교원인사규정」제30조를 따르며, 다만「교원인사규정」제29조 제2항의 재계약 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, 학문연구, 산학협력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항은 「대학성과평가규정」에 의한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.

평가영역	가중치(%)
학생교육·지도	10 ~ 30
학문연구	20 ~ 30
산학협력	50 ~ 70
합계	100

제13조(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) ①각 학과장, 부속시설 등의 장, 교육시설, 연구시설 및 사업단의 장은 산학협력중점비전임교원(이하 "비전임교원"이라 한다)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산학협력중점비전임교원 추천서<별지 2-1>
2. 활용계획서<별지 2-2>
3. 이력서<별지 2-3>
4. 산학협력중점비전임교원 계약서<별지 2-4>
5. 최근 3년간 산학협력실적<별지 2-5>
6. 학력 및 경력증명서

②비전임교원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4조(비전임교원 임용기간) ①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

②비전임교원의 재계약임용은 산학협력 교육, 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 실시한다.

제15조(비전임교원 보수 및 복무 등) ①비전임교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며, 국가정책 및 특별사업에 의한 외부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.

②비전임교원의 소속은 산학협력단 및 해당 사업단에 둔다.

③교과교육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에게 강사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
④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비전임교원 해임)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용계약을 위반한 경우
2.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3. 산학협력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4.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 수행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
5.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제17조(기타) ①비전임교원은 연구시설 등을 이용할 때 대학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비전임교원에게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<별지 1-1>

산학협력중점교원(전임교원) 추천서

성 명 (한 문)		소속 및 직위	☐ 소 속 : ☐ 직위(급):
주 소			
연락처	☐ 사무실 : ☐ 휴대폰 :	생년월일	
주요경력	☐ ☐ ☐ ☐ ☐ ☐		
추천사유			

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.

20 년 월 일

부서장 (인)
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

〈별지 1-2〉

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 동의서

인적사항

소 속 :

직 명 :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을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
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장 (인)

목 포 과학대 학교 총장 귀하

산 학 협 력 계 획 서

I. 배경 및 동향

II. 내용 및 방법

III. 기간별 추진일정(추정)

일련 번호	세부 내용	세부 추진 일정 (개월)								비 고					
		1	2	3	4	5	6	7	8						
1															
2															
3															

IV.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구 분	내 용
기술적 측면	
경제 · 산업적 측면	
활용방안	

<별지 1-4>

최근 3년간 산학협력사업 및 연구실적 목록

1. 특허출원 · 등록 실적

제목	발명인	출원, 등록여부	연구분야	출원국가	출원등록일자 (YY-MM-DD)	출원/ 등록번호	출원 등록인

2. 산학협력사업 수행 실적

사업명	사업수행기관	수행기간 (본인 참여)	직위	지원부처	특기사항 (상별)

3. 연구논문 실적

제 목	주 저자명	공동 저자명	학술지명	논문 분야	논문순위 (순위/전체)	I.F.	게재 년월	발행 국명	SCI 여부

상기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작성자 : (서명)

산학협력중점교원(비전임교원) 추천서

성명 : (한자 :)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최종학력 :

상기인은 본교 ()에서 산학협력 사업과제에 종사할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되었기에 추천합니다.

임용예정직명 :

임명예정기간 : 개월 (. . - . .)

책임교수 직.성명 :

예정보수 및 재원 : 월 만원 (재원 :)

추천자 직위 :

추천자 성명 : (인)

20 . . .
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

〈별지 2-2〉

산학협력중점교원 활용계획서

목포과학대학교 0 0 0 0 에서는 협약(규정)에 따라 0 0 0 교원을 학과(학부)의 산학협력 중점교원(0 0 교수)으로 임용하여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추천합니다.

성 명	소속기관 및 직명	전공분야	활용계획

임명 요청기간 : 개월(. . - . .)

책임교수 직.성명 :

예정 보수 및 재원 : 월 만원 (재원 :)

20 . . .

추천 부서명 :

추천자 직위 :

추천자 성명 : (서명)

산학협력중점교원 계약서

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규정(이하 "규정")에 의거하여 목포과학대학교총장(이하 "사업주"라 한다)은 산학협력중점교원(이하 "근로자"라 한다)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당사자)

사업주 : 목포과학대학교총장

근로자 : 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 소 :

제2조(근무기간) "근로자"의 근무기간은 _년_월_일부터 년_월 _일(개월)까지로 한다.

제3조(소속 및 직급) "근로자"의 소속은 목포과학대학교 _____(으)로 하며, 직명(급)은 _____(으)로 한다.

제4조(보수) ① "근로자"의 보수는 월 _____원으로 하고 본교 급여일자(_일)에 지급한다.

② 월 도중 채용되거나 "사업주"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.

③ 산학협력의 기획 및 수행이 우수할 경우 인센티브 ()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근로자의 의무) "근로자"는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성실하게 산학협력, 연구 등 과제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.

제6조(복무) "근로자"의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.

제7조(계약의 해지) "근로자"가 이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"사업주"가 채용계약을 해지한다.

제8조(퇴직금) "사업주"는 "근로자"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.

제9조(기타)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례에 따르고,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"사업주"의 해석에 따른다.

② "근로자"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에 관하여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(사업주) 목포과학대학교총장

(서명 또는 날인)

(근로자) 산학협력중점교원

(서명 또는 날인)

〈별지 2-5〉

최근 3년간 산학협력사업 및 연구실적목록

1. 특허출원·등록 실적

제목	발명인	출원, 등록여부	연구 분야	출원 국가	출원등록일자 (YY-MM-DD)	출원/등록번호	출원등록 인

2. 산학협력사업 수행 실적

사업명	사업수행기관	수행기간 (본인 참여)	직위	지원부처	특기사항 (상별)

3. 연구논문 실적

제 목	주 저자명	공동 저자명	학술 지명	논문 분야	논문순위 (순위/전체)	I.F.*	게재년월	발행국명	SCI 여부

상기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작성자 : (인)